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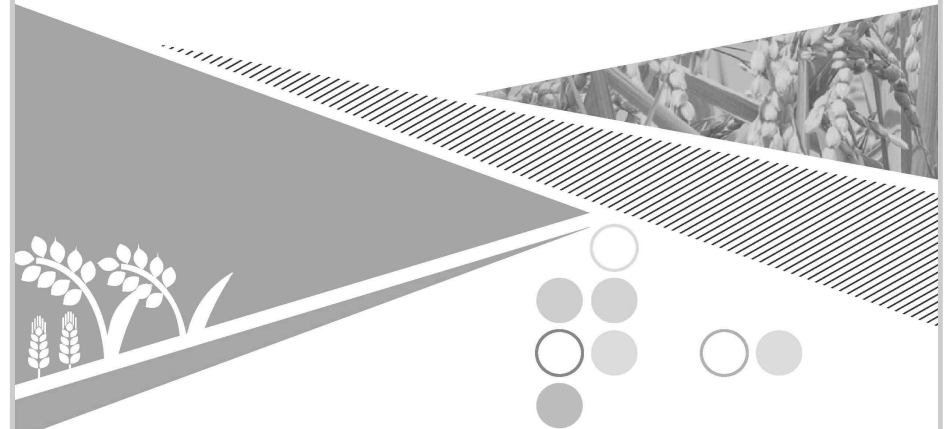
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

2019. 1.

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농림축산식품부

Ⅲ.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



1. 양곡의 용도 : 공공용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용)

2. 공급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한 자

3. 공급연산 및 가격

- 공급연산 : 2018년산 일반쌀
- 공급가격
 - 생계·의료수급자 3,880원/20kg(지대), 1,960원/10kg(지대)
 - 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 19,410원/20kg(지대), 9,800원/10kg(지대)

4. 공급단량

- 공급 단량 : 20kg 지대, 10kg 지대

5. 공급절차

- 정부 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대상자는 구입신청서를 해당 읍·면·동 사회복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
-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·면·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 부서에 **수요량과 인수예정일 제출** (18일까지)
 - 지역별 인수 예정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양정부서에 통보하여 신선했던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
 - ※ 양정담당부서는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: 19일
- 시·군·구(또는 시·도)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 인도(출고)지시서 발부 및 출고지시
- 택배업체(농식품부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)는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곡 인수

- 창고 출고일 후 최단기간 내 민원인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
- 시·군·구(또는 시·도) 양정담당 부서는 택배업체가 지역별 배송기한 이후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
- ※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급량 신청, 대금납부고지서 발부,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, 출고지시서 등은 새올행정시스템, FAX 송·수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

6. 민원처리

- 양곡품질 민원 발생 시 양정부서는 해당 민원인에게 공급된 쌀의 도정일, 창고입고일, 창고출고일(택배업체인수일), 민원인이 수령한 일자를 우선 확인
- 창고출고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 후 민원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택배관리부서인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
- * 택배배송기한 : 1차 배송지역은 21일부터 15일 이내, 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배송
- 기한 내 배송된 경우 해당 쌀의 품질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조치
- * 품질확인 시 필요할 경우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협조 요청
- * 해당가구가 월 신청물량 이상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보관 시 발생가능한 문제 등을 안내하고, 필요 시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공급 물량을 조정하도록 조치

7. 기 타

-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통(시중유통, 판매 등)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·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

-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
-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

1 제도 개요

1 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

- 정부관리 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
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. 단,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)
 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)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(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)
-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
- 장애인 수당 수급 가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)
-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)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)

2 신청 및 공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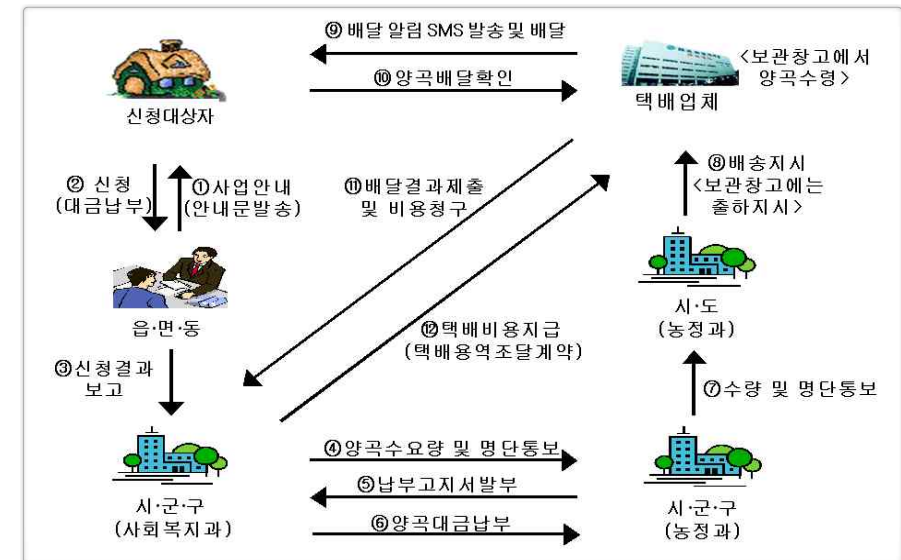
- (신청) 매월 10일까지 신청. 다만,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
- (공급)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*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(해당지역은 27페이지의 '지역별 배송일정 현황' 참고)
 - ※ 2차 배송지역 시·군·구는 배송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사전 안내 등 노력

3 공급가격

(단위 : 원)

구 분			양곡대금(개인부담)
신 곡 (18년산)	10Kg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1,960
	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9,800
	20Kg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3,880
	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19,410

4 업무처리 프로세스



● 신청접수

-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 신청 안내문 발송
-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
- 신청결과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 제출

●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

-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요량 양곡담당부서에 통보
- 양곡대금 양곡담당부서에 입금

● 양곡출하 지시

- 양곡담당부서는 양곡출하 지시

● 배달

-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인수 후 배달

5 공급 물량

●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* 1인당 월 10kg

- * 5인 이상 가구 매월 40kg으로 제한 폐지
(예 : 5인가구-50kg까지, 6인가구-60kg까지)

* 가구원수 산정 기준 : 보장가구 속하는 모든 가구원 수(단, 별도 가구로 보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)

● 양곡신청가구는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포장단위(10kg, 20kg)를 선택하여 구입 가능

●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,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

6 공급 방식

● 공급 신청지(주민등록상 주소지)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

7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(용도의 사용 금지)

●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

-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

* **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·처분(시중유통, 재판매 등)한 사람은 「양곡관리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·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**

-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,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**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(1588-8112)**에 신고

2

지원 실시

1 신청접수

● (신청안내) 신청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신청 안내문 발송

- 신청 및 공급기간,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, 납부 계좌번호, 양곡의 부정유통(판매)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

● (연간수급계획) 기초·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 연간수급계획 작성(행복e음)하여 연간 수급대상 관리

● (접 수) 매월 10일까지. 다만,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전까지 접수 가능

- 대상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신청량,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
-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 기재토록 함(자활서식 42호, 43호 참조)
- 읍·면·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

<관리대장 예시>

(0000년)

성명 (세대주)	가구원수	주소	전화 번호	수 요 량						
		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

-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

* 성명, 가구원수, 주소, 전화번호,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

-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대금(공제액)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

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계급여지급예정액, 공제액(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), 생계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

*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이용하여 『생계급여지급예정액, 정부양곡대금공제액, 생계급여 지급액』을 산출

2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

- (시·군·구)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·면·동 수요량 취합 : 17일까지
- (시·도)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: 18일까지(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수요량 등)

–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: 19일까지

● 양곡대금 공제 및 입금

- (생계급여수급자)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: 19일까지
-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 계좌에 입금 조치 : 20일까지

*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(유선)

- (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양곡 대금납부* 확인 : 19일 까지

· 신청자가 납부한 양곡대금을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: 20일까지

*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(유선)

* 양곡대금 납부방법

(생계급여수급자)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공제

- 단,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,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

(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양곡구입을 신청한 대상자는 읍·면·동 '별도 계좌 (양곡대금 출납전용)'로 입금하거나 읍·면·동을 통한 현금납부 가능

3 양곡 매출 지시 및 배달 의뢰

- 시·군·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: 20일

* 시·군·구(시·도)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, 전화번호 등을 읍·면·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

4 배달

-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: 21일부터 15일 이내(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)
- 택배회사는 신청자에게 배달하고 신청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제출
-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

<지역별 배송일정 현황>

구분	지역
1차 배송지역 (162개 시군구)	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(단,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,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2차 배송지역)
2차 배송지역 (67개 시군구)	서울(종로구, 용산구 , 성동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도봉구, 마포구, 동작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), 부산(중구, 서구, 영도구, 강서구, 수영구, 기장군), 인천(중구, 동구, 강화군), 대전(대덕구), 울산(중구, 남구, 동구, 울주군), 경기(동두천시, 고양시, 오산시, 군포시, 의왕시, 이천시, 김포시, 광주시, 여주시 , 연천군, 가평군, 안산시 상록구), 강원(삼척시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), 충북(단양군), 충남(보령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, 서천군, 태안군), 전북(진안군, 장수군), 전남(여수시, 순천시, 화순군, 강진군, 장성군, 완도군, 신안군), 경북(안동시, 영주시, 의성군, 청송군), 경남(김해시, 밀양시 , 의령군, 창원시 의창구,), 제주(서귀포시)

5 민원 처리

- 택배지연 민원 발생 시 읍·면·동에서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(02-324-2155)으로 직접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콜센터 번호 안내하고, 이에 대해 양정담당부서에 즉시 통보

* 배송지연건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집계·보고

- 양곡품질 민원 발생시 각 시·군·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 양곡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즉시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

3

부정수급자 환수 처리

- 소득·재산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환수 실시
- 양곡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로써, 개별 법령*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환수금액에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을 고지토록 함
 -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족지원법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연금법, 사회보장기본법
- 기초 양곡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시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환수여부를 결정하되,
 -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

4

통계 보고

- 정부양곡 지원관련 보고사항
 - 시·군·구청장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월별 정부양곡 지원 실적(자활서식 44호)을 시·도를 경유하여 **농식품부장관(식량정책과)**에게 다음달 7일까지 보고